

제1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1. 3. 11. (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 목 차 】

1.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면
2.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면
3.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29 면
4.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44 면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2. 28.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3. 3.

2. 제정이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 11.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거창군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산업보존 구역의 지정 범위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마.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절차와 조건 등의 부과,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둠(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4, 제8조, 제13조의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예산확보 내역 기술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2. 31.~2011. 01. 25.)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진입에 따른 전통 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 11.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제5조(목적, 정의, 군의 책무, 주민의 관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거창군,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하기 위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2장(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상생발전 실태조사)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안 제3장(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촉진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안 제4장(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은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안 제13조~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조건 등의 부과,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절차와 조건 등의 부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6)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0.11.24] [법률 제10398호, 2010.11.2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의2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4.1>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공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제3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3(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개정 2009.10.1>)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전문개정 2006.6.22]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제6조의4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체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6.6.22]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110 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시·군·구의 지역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당해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당해 지역 내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당해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당해 지역 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당해 지역 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당해 지역 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④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조의 협의회 운영 또는 제4조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10.14] [지식경제부령 제96호, 2009.10.14, 일부개정]

제5조(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삭제 <2006.6.30>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법 제8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
- ③ 법 제8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09. 3.27] [법률 제9184호, 2008.12.2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8913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12.31, 일부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중소기업청(시장개선과), 042-481-45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28, 일부개정]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2. 28.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3. 3.

2. 개정이유

가. 지자체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2010.4.2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식을 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보조금 폐지 권고(10.4.21)에 따라 종료하고 업체 수혜 효과가 큰 농공단지 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의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조항 삭제
- 나.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함(안 제19조의3)
- 창업보육센터 지원방법 변경
 - 현행: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
 - 변경: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이나 행정 지원 및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2011년 당초예산 확보(20,000천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12. 29. ~ 2011. 01. 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자체의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권고(2010. 4. 2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식을 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보조금 폐지권고(2010. 4. 21.)에 따라 종료하고 업체 수혜효과가 큰 농공단지 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제18조 삭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안 제19조의3(창업지원)은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3)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0.12. 9] [법률 제10354호, 2010. 6. 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0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6.8>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12. 9] [대통령령 제22519호, 2010.12. 9,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5.9>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2009.11.20>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7조(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2. 8.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3. 3.

2. 제정이유

-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 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거창군 애우(艾牛)의 사육 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배넛소의 대부대상이 되는 농가와 대부 제외대상 농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대부대상: 군 관내 거주자로서 한우사육기반 시설 등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마을 이장·개발위원장·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함

- 대부 제외대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신청농가
- 다. 배넷소의 대부 신청 및 대부대상 농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배넷소를 대부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육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배넷소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함
 - 배넷소 대부대상 농가는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함
- 라. 배넷소의 대부두수와 대부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배넷소는 농가당 3두 이내로 대부하고, 대부기간은 배넷소를 대부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로 함
- 마. 배넷소의 상환 및 상환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과 배넷소 사육농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배넷소 사육농가는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현금으로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농가의 소유로 함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변동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바. 배넷소 대부계약의 해제사유와 사육농가의 손해변상 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육농가가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배넷소의 관리상 책임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넷소를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대부받은 배넷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 군수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사육농가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육농가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5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 「축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당초예산으로 확보(200백만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1. 1. 12.~1. 31.)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애우(艾牛)의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1조~제2조(목적 및 정의)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사항이며,

(2) 안 제3조~제5조(대부대상, 대부신청, 대부대상농가의 선정)는 애우 배넛소의 대부대상과 대부신청 방법 및 대부 대상농가의 선정에 따른 조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안 제6조(대부두수 및 대부기간)는 애우 배넛소를 농가당 3두 이내로 하고 대부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됨

- (4) 안 제7조~제8조(배넷소의 상환, 공제 및 보험가입)는 애우 배넷소의 상환방법과 공제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으로 부합하다고 사료됨
- (5) 안 제9조(사육농가의 책임 등)는 애우 배넷소를 대부분은 농가가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안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는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환기간을 연장토록 정한 것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7) 안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는 애우 배넷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1호부터 4호까지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부분 받은 배넷소를 반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8) 안 제12조(중복지원 금지)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간 이전에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9) 안 제13조(변상조치)는 사육농가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폐사 등의 손실 시 손해를 변상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10)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농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농림수산물식품부(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2-500-17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15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5호, 2010. 2. 4,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2-2110-6835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6.03 조례 제18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의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을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2의 가축

[별표 1]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 고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못안골, 동산 제외), 대평리(들성 제외), 김천리, 송정리(운정, 절부 제외)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 고
거창읍	정장리, 장팔리, 가지리(성산 제외)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구분	규 모	비 고
축제, 군조, 야생조수보호시설 등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한함	야생조수 보호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법 제11조에 준하여 규제

□ 「축산법」

[시행 2010.11.26] [법률 제10310호, 2010. 5.25,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02-500-2050~2051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2. 28.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3. 3.

2. 제정이유

-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 교육으로 거창군 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대학의 명칭, 위치 등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대학의 조직구성과 학장 등의 임무,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대학기구로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기구로서 설치하는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대학의 입학자격과 등록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과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 재학생 상벌 및 학칙의 제정 등 학사 운영에 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마. 그 밖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보칙으로 규정하고, 종전 거창사과 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시행사항을 부칙 경과조치 규정으로 둠(안 제19조, 제20조,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7조, 제9조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당초예산 확보(52,000천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1. 21.~2. 9.)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특화 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 교육으로 거창군 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제2조(목적 및 설치)는 조례의 목적과 대학의 명칭, 위치 등 그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필수 조항이며
 - (2) 안 제3조~제5조(조직, 학장 등의 임무, 강사의 위촉 등)는 대학의 조직 구성과 학장 등의 임무,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3) 안 제3장(대학운영위원회)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기구로서 설치하는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안 제4장(학사운영)은 대학의 입학자격과 등록절차 등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과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 재학생 상벌 및 학칙의 제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 「농촌진흥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57호, 2010. 1.25,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행정법무담당관실), 031-299-2944

제2조(사업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 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 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3.26] [대통령령 제22096호, 2010. 3.26, 일부개정]

제9조(교육훈련기관) ①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8, 2009.8.25>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
 3.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 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